

# “교수 갑질은 불법행위”…법원도 인정했다

광주지법, 지스트 연구소 갑질 사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판결  
학내 징계·인권위 권고 결정 이어 법적 책임 명시…“위자료 줘야”  
‘대학원생 사망 사건’ 이슈 속 주목…재발방지 시스템 개선 절실

대학 교수의 갑질 행위는 직장 내 징계 대상이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법원 판단까지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 갑질 피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다.

교수가 대학 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이어 법적 책임까지 명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 국립대인 전남대에서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망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대학생·연구원생들이 나서 전남대 총장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을 촉구하는 등 학계의 ‘갑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중환 판사는 지난달 31일 지스트 산하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A씨가 전 연구소 소장 B씨, 동료 연구원 C씨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자료 등 명목으로 B씨는 940만원, C씨는 1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 등이 A씨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최하위로 주는 등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인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책임자로서 2년동안 과제를 수행했다가, 3년차가 된 2022년 5월 돌연 책임자 자리에서 쫓겨났다. B씨가 연구소 내부 TF팀을 새로 구성하고 책임자를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등 A씨를 업무에서 배

제시킨 것이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지난 2년간의 과제 내용이 X판이다”는 등 격한 표현을 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연구원 C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1~2차년도에 한 연구는 ‘쓰레기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2022년 10월 지스트 인권센터에 갑질 피해를 신고하자, 괴롭힘은 강도를 더해갔다. 같은 해 12월 B씨는 A씨가 상급자에 반발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는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광주지법에서 각하당했다. 또 그 해 인사평가에서 A씨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계약만료 통지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스트 인권센터와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등은 B, C씨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스트 인권센터는 2023년 2월 인권위원회를 열고 B, C씨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10월 ‘사업 책임자 변경 행위 등은 B씨에 의해 일방 추진됐으며, B씨의 발언도 인격권 훼손에 해당한다’며 지스트 총장에 B씨에 대한 인사 조치,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의 행위로 A씨가 연구 과제에서 배제되고도 다른 과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피고 B씨의 행위와 발언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측은 “지스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괴롭힘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판결”이라며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 광주 쌀 우수성 홍보 ‘米人들’이 떴다



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5년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본량 농민회원들이 광주지역 RPC에서 생산하는 광주 쌀 포대를 활용해 만든 홍보 의상을 입고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학원생 사망’ 전남대 소극적 대응 빈축

총장 공개사과 미적  
진상조사 공개 미온  
갑질 예방대책 미흡

전남대가 대학원생 A(24)씨의 갑질 피해 호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발생한 지 4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커녕,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책임있는 국립대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갑질 교수의 수업 참여 등 무관심한 행태에 대한 질타(광주일보 10월 23일 3면)를 받고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연대하면서 한 목소리로 대학측의 사과와 학생 인권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광주일보 11월 7일 6면), 공개 사과는 커녕 인권실태조사를 쑥쑥 숨기는가 하면, 유족들에게조차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지난 5일 전남대에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유족들은 사건 직접 관계자로 학교측에 진상조사결과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학 측의 공개 사과 표명도 없는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국정 감사 과정에서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교수 개인 비리로 취급하는 문화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총장 명의의 공개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은 “대학원생 갑질 문제는 전남대만의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위해제됐

으나, 그 이후 연구교수에 대한 계약 해지나 두 교수에 대한 징계 등 논의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는 전남대가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커녕 뒷북 행태만 보이고, 그나마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대처하고 있어 ‘민주·인권·평화의 정신’, ‘5·18민주화운동 성지’ 등 이름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대학 측에서 협력하면 하루이틀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를 마치고 공개할 수 있을텐데 오래 걸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남대도 A씨가 당한 갑질 피해에 대해 손놓고 있었던 만큼, 법률관계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일보는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대 홍보실장·대외협력처장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전남 지자체 실효성 없는 갑질 근절대책

직장갑질119, 조례·훈령 분석  
광주시, 징계 가능 임의 규정만  
전남도, 징계 조치 규정도 없어

정부가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7년여가 지났음에도 광주·전남의 갑질 근절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9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훈령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징계 규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거

나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광주시의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서 갑질 행위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전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서는 징계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이 아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질 예방대책과 관련, 전남도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정하면서 구제적인 수립 주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

사 기간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문구를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조례에 ‘허위 신고’ 조항을 포함해 ‘허위신고 시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항은 갑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직장갑질119 측 주장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는 ‘허위신고 시 징계’ 등 내용이 포함된 다수 조례의 조항을 폐기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sup>+</sup>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sup>+</sup>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